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29
----------	-----

제출년월일 : 2023. 6.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및 방과후 “놀이”와 “쉽”을 통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시립 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나. 길음소리마을센터 내 성북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설치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유형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개소월	소유자	비고
일반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2호점	삼양로9길 14-7, 길음소리마을센터 2~3층 (길음1동)	196.1㎡	30명	2023.10 (예정)	서울특별시	신규 설치

나.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라.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